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0
------------	------

2020년 6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의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의 공채 매입 대상 및 매입 대상별 매입 금액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공채 매입 대상을 기존 소형, 중형, 대형에서 소형, 중형, 대형, 다목적형으로 분류함

-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공채 매입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3. 12.~4. 1.) 결과: 의견없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중 “다목적형”의 공채 매입규정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매입 금액의 범위를 규정하여 형평성 논란방지 및 친환경 차량구매 촉진에 일부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도시철도공채 발행 및 매입 관련 규정

-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원조달을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 및 매입 근거

<p>「도시철도법」</p> <p>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u>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자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u></p> <p>3. 제20조에 따른 <u>도시철도채권의 발행</u></p> <p>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u>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u></p> <p>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u>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도시철도법 시행령」</p> <p>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u>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p>

-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¹⁾에 도시철도공채 매입대상 및 금액을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도시철도공채 매입 대상 추가 관련

- 현행 법령에서는 이륜자동차 등을 제외²⁾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 차량”이라 한다.)’ 및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일반차량”이라 한다.)’로 구분하되 각각을 ‘소형·중형·대형’ 등으로 세분하고 있음

※ 참고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범위

구분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자동차 신규 등록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중형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대형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소형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중형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대형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 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도급금액의 100분의 2로 하되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아니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

- 하지만, 비사업용승용자동차 신규등록시 ‘일반차량’에 채권매입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다목적형’이 ‘친환경 차량’에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다목적형’ 친환경 차량을 신규등록할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공채 매입금액의 범위를 “차량유형에 따라 5%” 또는 “차량크기에 따라 9~20%” 등 상이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혼란 및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 참고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중 “다목적형” 차량 매입금액 범위

구 분		부과 사유
갑설	5% 부과	- 전기 및 수소차의 경우도 <u>차량유형이 다목적 차량의 경우 별도 적용해야 함</u> - <u>일부 자치구의 경우 조례에 따라 4% 발행</u> · 부산시, 대구시의 경우 다목적형 4% 부과
을설	9~20% 부과	- 법령에 전기 및 수소차의 경우 다목적형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u>외형(구조)에 따라 9~20% 적용</u>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부법률 자문³⁾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례로 ‘다목적형’에 대해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3) 법률자문 회신 2019-1287[2019.12.27. 법률지원담당관] : 조례 개정 가능함

- 조례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다목적형을 매입대상으로 별도 분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목적형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가 동일함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매입대상에서 다목적형에 대한 분류를 두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도적인 배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1.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2. 개정 당시 다목적형 전기·수소차의 개발·양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국토부 회신)
 3.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다목적형 자동차를 별도 분류하여 매입금액의 범위를 더 낮게 정함

국토교통부에서는 ‘법 개정 당시 다목적형 친환경 차량의 개발·양산 수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다른 시·도의 경우4)에 이미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

※ 참고 : 도시철도채권 다목적형에 대한 회신 내용(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4093(19.12.16.))

종류	질의내용	회신내용
1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2〕제1호 가목 1) “가)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항목 내에 다목적형에 대한 분류를 두지 않은 이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2〕제1호 가목 1)은 개발·양산 추이에 따라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되, 개정 당시 다목적형 전기·수소차 개발·양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2012. 3. 13)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2〕제1호 가목 1) “가)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중에서 다목적형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도시철도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미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다목적형 자동차에 대해 채권매입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4)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개정 2016. 12. 30.>
가. 신규등록

(3) 다목적형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신규등록

3) 다목적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 특히, 친환경 차량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높은 공채 매입률을 적용받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차량 확대를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기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차량 신규등록시 ‘다목적형’에 대한 도시철도공채 매입기준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5%’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혼란 및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구매촉진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 법령에 “다목적형”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없이 내부법률 자문 및 국토부 회신의견에 따라 조례에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 보다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관련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를 규모별, 유형별로 구분⁵⁾하고 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도 규모별 구분의 경우

5) 1. 규모별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종류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

이를 준용하고 있으나 “다목적형”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목적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도록 개정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동차		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입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 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액은”을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매입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금액의 100분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채의 매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u>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u> <u>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u> <u>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다</u> <u>만,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u> <u>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u> <u>계약 체결시 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u> <u>은 도급금액의 100분의 2로 하되</u> <u>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u> <u>에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아</u> <u>니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 ----- 금액 <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단서</u> <u>삭제></u></p> <p>1. <u>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u> <u>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u> <u>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u> <u>(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u> <u>제외한다) 매입 금액: 취득세 과</u> <u>세표준액의 100분의 5</u></p> <p>2. <u>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u> <u>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u> <u>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u> <u>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u> <u>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u> <u>금액의 100분의 2</u></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을 등록할 때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 시 시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 금액을 기존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임
-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도시철도과 권형구 (☎ 2133-4343)